

2 (第80回一内務第3次)

<p>으로 政府 및 國會에 대하여 서울特別市自治行政에 關한 特別法 制定을 促求하는 建議文을 採擇할 것을 提議합니다.</p> <p>提案者 金永俊</p> <p>○委員長 吴世根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上程된 案件에 대하여 이미 第2次 内務委員會 会议 終了後 가진 委員會 懇談會에서 討論過程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서울特別市自治行政에 關한 特別法 制定 建議案에 대하여 金永俊委員이 書面 提出한 原案을 우리 委員會 案으로 議決하고자 하는데, 委員 여러분 异議 有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가 없으므로, 金永俊委員이 發議한 同建義案이 우리 内務委員會 案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參 照)</p> <p>서울特別市自治行政에 關한 特別法 制定 建議案</p> <p>○1991.7.8.은 30年 만에 中斷되었던 地方自治가 住民의 손으로 뽑은 議員들로構成된 地方議會가 出帆한 뜻깊은 地方議會의 時代였다면, 1995.6.27.은 民選地方自治團體長을 비롯한 四大地方選舉가 同時に 이루어져 그야말로 全面的인 地方自治時代가 활짝 열린 해이다.</p> <p>草創期에는 地方自治의 經驗이 日淺하였을 뿐 아니라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住民代表機關으로서 住民의 權益과 福祉增進을 為해 努力하였고, 未洽한 法令과 制度를改善하고 补完하는데 热과 誠을 다하여 議政活動을 하였다고 自負한다.</p> <p>○全面的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1,100萬의 서울市民들은 서울市政을 펼칠 市長과 이를 監視·監督하는 市議會에 거는 期待는 엄청난 것이다.</p> <p>交通·清掃·住宅·環境·맑은 물 供給·生活의 安全과 福祉增進等 市政全般에 걸쳐 山積한 民願들을 解消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이룩해 주기를 크게 期待하고 있으며, 보다높은 良質의 公共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.</p>	<p>○地方自治制는 中央에 集中되어 있는 權限을 民主的 方法으로 配分하여 地方政府의 自治와 自律性을 提高하고, 地方議會運營의 效率性과 地方議會議員의 圓滑한 議政活動을 保障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</p> <p>특히, 地方自治는 中央執權時代의 劃一의 인 中央統制나 命令指示로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그 地域實情에 맞게 自律性과 特殊性을 살려야 하며, 그것을 살리지 못할 때에는 住民自治乃至 풀뿌리 民主主義는 發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</p> <p>○서울特別市는 우리 나라의 政治, 經濟, 社會, 文化的 中樞的機能이 集中된 首都이자 우리나라 人口의 1/4이 넘는 1,100萬市民이 살고 있는 世界에서 4位에 이르는 巨大都市이자 이시아太平洋時代의 先進都市로서 國際競爭력을 確保하는 것이 急先務. 인데도, 他市·道와 같이 劃一의으로 地方自治法을 비롯한 關係法令과 制度로써 規制하고 있다.</p> <p>○따라서 우리 서울特別市議會에서는,</p> <p>첫째：自主의 組織權 確保, 둘째：人事權의 自律性 確保, 셋째：豫算編成의 伸縮性 確保, 넷째：政府 財政支援 確保, 다섯째：政府의 重複된 監查止揚 등 서울特別市位相에 맞게 그 特例가 認定되어야 마땅하다고 確信한다.</p> <p>○全面的인 地方自治時代의 原年을 맞아 서울特別市議會는 서울特別市가 國家基本政策의 受容範圍內에서 地域實情에 걸맞는 首都서울의 自治權擴大를 為한 特別法 制定을 政府와 國會에 對하여 建議하는 것이며, 우리의 이러한 建議事項이 꼭 反映되기를 바라면서 關係機關의 폭넓은 理解와 協助를 當付한다.</p> <hr/> <p>2. 民防衛局所管主要懸案業務報告 (14時 18分)</p> <p>○委員長 吴世根 다음 案件を 上程하겠습니다. 議事日程 第2項 民防衛局所管 主要懸案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民防衛局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, 안녕하셨습니까? 반갑습니다.</p> <p>지난 第79回 臨時會에서 이미 所管局別</p>
--	--